##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95

발의연월일: 2020. 11. 2.

발 의 자: 金炳旭・김기현・류성걸

이 용・이종배・정진석

주호영 • 추경호 • 태영호

황보승희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가 술에 취한 사람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음.

그러나 「형법」에서는 심신장애인이 죄를 지은 경우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죄의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로 인한 감경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자부
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
	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
	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
	50조제1호다목의 죄를 범한 때
	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
	<u>다.</u>